

2016.02.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시행일자

개정이유

-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으로 수입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절반 이상이 수입식품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으로 관리하고 있어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세계의 정책 흐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또한,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 전(前) 단계의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통관 단계, 시중 유통단계의 상호 연계 및 환류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률의 전면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시행일자 : 16. 2. 4.(목)**

2016.02.11

주요내용

①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절차

- »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7일전까지 업소와 관련된 정보가 등록 되어야 합니다.
- » 등록 신청은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고대행자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수입신고 7일전까지는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등록이 되지 않은 해외제조업소 제품이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법 시행(‘16.2.4)에도 불구하고 해외제조업소가 충분히 준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6개월간(‘16.8.4까지) 등록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하나 ‘16.8.5부터는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② 해외제조업소 변경등록 및 갱신절차

변경신청은 기존에 등록한 신청인이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수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련 내용을 제출받아 등록 관리자가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 기존 수입·판매업 통합 및 업무 이관

당초 지자체(시·군·구)에서 영업신고를 받았던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과 지방식약청에서 영업신고를 받았던 ‘축산물 수입·판매업’이 2016.2.4.부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서울·부산·경인청) 또는 식품안전관리과(대구·광주·대전청)로 영업등록 업무가 이관됩니다.

2016.02.11

주요내용

④ 신설된 영업의 등록

- » 법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이 신설됩니다.

⑤ 영업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

- » 법 시행에 따라 등록된 영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항에 따라 영업등록 사항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영업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영업등록 사항 '변경등록신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영업장의 면적(보관업에 해당)이 변경될 경우에는 '영업등록 사항 변경신고'

⑥ 영업 등록에 따른 위생교육

- » 신규로 영업 등록 신청 시 위생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신고대행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신 후 영업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된 기존 영업자는 종전의 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시기에 맞추어 보수교육만 받으면 됩니다.